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92
----------	-----

2011년 6월 3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년 4월 11일, 김용석(서초4) 의원 외 11명
- 나. 회부일자 : 2011년 4월 12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1년 6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용석(서초4) 의원)

가. 제안이유

- 동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일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장작품추천회의의 내부전문가인 “관장과 담당과장” 중 “관장”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담당과장”은 “미술관의 문화예술분야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수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정확히 하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소장작품추천위원회의 내부전문가로 규정된 “관장”과 “담당과장”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안 제22조제2항).
-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다”는 자율조항에서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변경함(안 제27조).
-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안 제28조제2항).
-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을 “관장”으로 수정함(안 제3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첫째,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율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함.
 - 둘째, 소장작품추천회의의 구성원이 되는 “관장”과 “담당과장”,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기함.
 - 셋째, 제22조 조문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 따라 제34조의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을 “관장”으로 수정함.
- 동 개정조례안 제27조에서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한 것은 동 조례 제22조제1항에서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되 소장작품추천회의와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제2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도 “제2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소장작품 구입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소장작품 구입 절차상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됨.
- 동 개정조례안 제22조제2항에서 “관장”을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고 수정하고 제34조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을 “관장”으로 수정하는 것은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됨.
- 동 개정조례안 제22조제2항에서 “담당과장”을 “미술관의 문화예술분야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수정한 것은 소장작품추천회의의 구성원이 되는 담당과장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기 위함이나 “미술관의 문화예술분야를 담당하는 과장” 또한 모호한 점이 있어 “미술관의 소장작품 구입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개정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 사료됨.
- 동 개정조례안 제28조제2항에서 “당연직 위원”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으로 수정한 것은 “당연직 위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제1항에 당연직과 위촉직의 구분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소장작품 구입) ② 소장작품추천회의는 제27조에 따른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 5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와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미술관의 문화예술분야를 담당하는 과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내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시장은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4조 중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을 “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소장작품 구입) ①(생략)</p> <p>② 소장작품추천회의는 제27조에 따른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 5명 이내의 <u>외부전문가</u>를 참석시켜야 하며, 내부전문가는 관장과 담당과장을 포함한 3명 이내로 한다.</p> <p>제27조(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시장은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u>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제28조(위원회 구성) ①(생략)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u>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u></p> <p>제3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에게 위임한다.</u></p>	<p>제22조(소장작품 구입) ①(현행과 같음)</p> <p>② <u>외부전문가와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미술관의 문화예술분야를 담당하는 과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내부전문가로 구성한다.</u></p> <p>제27조(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u>설치·운영해야 한다.</u></p> <p>제28조(위원회 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 <u>서울특별시의회에 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u></p> <p>제34조(권한의 위임) <u>관장에게 위임한다.</u></p>